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6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김우영 · 이광희
김남근 · 민병덕 · 양부남
박홍배 · 임문영 · 한병도
송재봉 · 강경숙 · 박범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아동복지법」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·양육·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.

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·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

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799호)과 「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79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 행위는 각각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서 정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금지행위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7조(금지행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다 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행위에 대한 금지 행위는 각각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서 정한다.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 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원 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